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10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2018년 2월 27일

3. 제안사유

-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안 제5조)
-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안 제7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에서는 기념사업 지원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 출신 독립운동가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 수입·조사·연구 관련 사업,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이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단현실과 이념적 잣대 때문에 감추어지고 왜곡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됨.
- 또한 상위법인 「국가보훈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도 없음.